

	<h2 style="margin: 0;">예산결산위원회규정</h2>	규정번호	3-8-45
		제정일자	2025.11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 교비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예산 편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
2. 대학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
3. 대학 중기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
4. 기타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과 교무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직원 중에서 직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부위원장, 전문위원, 위원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③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9조(경비지원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2025.11.01.일부로 폐지된 예산편성위원회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